

對蒙 戰爭·講和의 과정과 高麗의 政權을 둘러싼 環境의 變化

이명미(서울대학교)

도입 _ 講和를 위한 몽골의 요구조건, 몽골적 관계형성 방식

국왕 親朝 요구에 대한 해석과 대응 _ 宗室의 외교활동 : 講和 교섭과

使行團 引率

투르각[禿魯花, turxax]의 파견과 宗室의 케식 참여

맺음

<참고자료> 몽골 복속기 고려국 왕위 계승도

도입 _ 講和를 위한 몽골의 요구조건, 몽골적 관계형성 방식

1231 년, 몽골은 고려를 침입해 왔고, 당시 최씨무신정권 아래에 있던 고려 조정은 江華島로의 遷都를 단행했다. 이후 30 여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講和와 전쟁을 반복하면서, 몽골은 講和의 조건으로 몇 가지 사항을 일관적으로 요구했다. 여기에는 江華島로 옮긴 도읍을 다시 開京으로 옮길 것에 대한 요구(出陸還都)와 함께 국왕의 親朝, 納質, 郵驛 설치, 供戶數籍, 助軍, 군량조달, 다루가치 설치 등 몽골이 정복지에 대해 요구했던 보편적 사안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6 事'라 지칭된다. 이러한 요구사안들은 몽골이 복속국을 직접적으로 통치하지는 않으면서도 그 정치·군사·경제와 관련한 주요 사안을 직접 통제하기 위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 가운데, 본 발표문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국왕의 親朝와 納質 요구이다. 특히 이 두 가지 문제에 주목하는 것은 이들이 몽골이 다른 정치단위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식, 다시 말해 유목사회에서 정치적 네트워크가 형성, 유지되는 방식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지배가문 간의 세대를 거듭한 통혼 역시 이러한 방식 가운데 하나이며, 고려왕실 또한 그 대상이 되었으나, 이는 애초에 몽골 측에서 고려에 대해 요구했던 사안이라기보다는, 고려 무신집권자에 의한 국왕 元宗 폐위라는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소 '돌발적으로' (고려세자에 의해) 제기되고 성사된 것이었다. 이에 비해, 국왕의 親朝 및 왕실의 자제를 質子, 투르각[禿魯花, turxax]으로 보낼 것에 대한 요구는 몽골이 이미 전쟁초기부터 해왔던 것이었다.

몽골에서 '納質'을 요구했던 데에는 일차적으로는 講和를 통해 전쟁을 종료하면서 복속국 수장의 자제를 '人質'로 들고고자 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의 종료라는 단기적 '사건' 이후 양자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투르각으로 몽골에 들어간 이른바 '人質_質子'들은 대개 케식[怯薛, kešig]에 들어가 몽골 황제·황실 및 지배층과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새로운 지배층으로 재교육되었다. 이러한 점은 이 시기에, 그리고 이후에 몽골로 간 고려 宗室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講和를 위해 국왕의 '親朝'를 요구한 것 역시 정치단위 首長 간의 직접적 관계형성에 대한 요구라는 점에서 '納質' 요구와 맥락상 통한다. 몽골에서 정치단위 首長

간의 직접적 관계가 정치단위 간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은 전쟁을 통해 세력의 규합과 분열이 반복되었던 유목사회의 특성, 그리고 分封을 통해 구성되었던 몽골 국가체제의 분립적·분권적 성격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몽골에서 전쟁 중에 있던 국가 혹은 정치단위와 강화를 맺기 위해서 는 그 국왕, 혹은 首長과의 직접적인 관계[개인 간·가문 간 관계] 성립이 중요했고, 그를 표현하는 수단이 곧 首長들이 황제를 직접 面對하여 복속을 표하는 親朝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같은 맥락에서 首長 가문의 子弟를 몽골에 보내어 入侍하게 하는, 투르카[禿魯花] 파견이 필요했으며, 필요에 따라 首長의 親朝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¹⁾

이러한 首長 개인 간·가문 간 직접적 관계 형성은 2) 그간 주로 使臣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冊封과 朝貢이라는 형식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던 국가 간 관계 형성방식에 익숙했던 고려의 입장에서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이에 고려 측에서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요구된 바 그대로는 아니지만 나름의 해석을 가하여 대응했고, 그러한 대응이 양자 관계의 진전에 따라 변화하면서 몽골과의 관계가 고려 사회, 특히 그 정치적 환경에 미친 영향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 역시, 본 발표문이 이 두 가지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아래에서는 講和를 위한 몽골 측 요구조건 가운데 포함되어 있던 국왕 親朝 및 納質 요구에 대한 고려 측 이해와 대응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대응방식이 양국 관계 안정 이후 어떻게 변화하며, 그러한 변화양상이 반영하는 이 시기 고려-몽골 관계의 특징 및 그 정치적 영향 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국왕 親朝 요구에 대한 해석과 대응 _ 宗室의 외교활동 : 講和 교섭과 使行團 引率

몽골은 1231 년(高麗 高宗 18) 1 차 침입 이후, 고려가 講和를 맺은 상태에서 江華遷都를 단행하자, 이를 이유로 곧 다시 침입해 왔다. 그리고 撤軍의 조건으로 국왕이 몽골에 와서 직접 황제를 만날 것, 즉, 親朝를 요구했다.³⁾ 이는 1 차 침입 이후 국왕의 친조 없이 맺은 강화가 강화천도로 그 불안정성을 드러낸 가운데 이루어진 요구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 측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몽골의 침입과 국왕 親朝 요구는 계속되었으며, 결국 1258 년 최씨정권 종식 이후 太子의 親朝를 통해 양국 간 講和가 성사되었다.

고려 측에서 국왕 親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데에는 심리적 거부감 및 무신집권기라는 정치적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인데, 고려는 국왕 親朝라는 몽골 측 요구를 피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요구에 내재한 안정적 관계 성립의 맥락에 응하기 위해 나름의 대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講和 교섭 과정에서 宗室들의 활동 및 강화 이후 宗室들이 正使로서 활동했던 양상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1) 이에 몽골에서 親朝는 諸王·封君이 카안에게 臣服하는 상징이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배반으로 인식되었다. 몽골에서의 親朝, 朝覲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李治安, 1989

『元代分封制度研究』, 天津古籍出版社, 297-299 면.

2) 몽골 지배층의 개인 간·가문 간 관계의 구체적 형태 및 그 의미와 관련해서는 김호동, 2010 『몽골제 국과 세계사의 탄생』, 돌베개, 96-100 쪽 참조.

3) 고종 19 년(1232) 11 월, 몽골 황제에게 보낸 진정표의 내용 가운데, 황제의 조서 내용을 운운하며 국 왕이 직접 朝覲하는 문제와 관련한 고려 측 입장을 표명한 부분이 있는 것을 통해, 『高麗史』 권 23, 고 종 19 년 11 월) 이에 앞서 고려에 전달된 몽골 황제의 조서에 국왕의 친조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고종 19 년 11 월 이전, 같은 해 7 월에 몽골의 조서가 전달된 바 있다. 『高麗史』 권 23, 고종 19 년 7 월 庚辰朔)

고려의 宗室이 正使로서 사행단을 인솔하는 양상은 몽골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사행 양상 가운데 하나로, 이 시기 고려-몽골 관계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몽골과의 관계에서 고려 宗室이 사행단을 이끈 사례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고려 종실이 對 몽골 사행단을 이끈 사례 (전거: 『高麗史』, 『高麗史節要』)

번호	사행 시기	인물	사행 목적
1	고종 26년(1339) 12 월	新安公 王侁	전쟁 중 교섭
2	고종 32년 10 월 壬午	新安公 王侁	전쟁 중 교섭
3	고종 40년 12 월 壬申	安慶公 王淏	전쟁 중 교섭
4	고종 44년 12 월	安慶公 王淏	전쟁 중 교섭
5	원종 원년(1260) 4 월 丙寅	永安公 王僖	황제 즉위 하례
6	원종 2년 4 월 己酉	太子 王諱	아릭부케 평정 하례
7	원종 6년 정월 乙未	廣平公 王恂	원종 친조시 후의에 대한 사례
8	원종 8년 11 월 甲午	安慶公 王淏	신년 하례, 일본초유 관련 보고
9	원종 11년 8 월 戊辰	世子 王諱	성절 하례, 배중손 반역 보고
10	원종 13년 정월 甲申	濟安侯 王淑	'大元' 국호 제정 하례
11	원종 14년 정월 癸亥	帶方侯 王澈	세자 혼사 허락 사례
12	원종 14년 윤 6 월 己未	順安侯 王棕	황후·황태자 책봉 하례
13	충렬왕 즉위년(1274) 9 월 戊戌	濟安公 王淑	공주 下嫁·국왕 작위 계승 사례
14	충렬왕 12년 5 월 庚午	濟安公 王淑	황태자 친김[眞金] 사망 조의
15	충렬왕 18년 윤 6 월 丙戌	世子 王璋	성절 하례
16	충선왕 즉위년(1298) 정월	平陽侯 王昫	禪位 허락 사례
17	충렬왕 복위년(1298) 9 월	中原侯 王昱	復位 사례
18	충렬왕 29년 11 월 戊寅	濟安公 王淑	전왕 귀국 요청
19	충숙왕 7년(1320) 6 월 己巳	丹陽大君 王珣	황제 즉위 하례
20	충숙왕 8년 3 월	丹陽大君 王珣	연호 개정·태후 책봉 하례

고려 宗室이 몽골 측에 使臣으로 파견된 사례는 전쟁 중 교섭 과정에서 이루어진 4 개 사례와 몽골과 講和가 이루어진 1259년 이후의 16 개 사례, 총 20 개 사례가 확인된다. 이 가운데 元宗 재위기간 중의 사례가 8 개로, 이 시기에 宗室 正使 파견이 집중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특히 元宗 代 첫 번째 사례인 元宗 원년(1260) 4 월의 사행은 고려-몽골 간 講和가 성사되고 元宗이 즉위한 후 처음으로 몽골에 파견한 사행이기도 했다.

몽골과의 관계에서 종실이 正使로서 사행단을 이끌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사례들이 대개 특별한 사안과 관련한 의례적 사행이었다는 점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실들이 사행단을 이끈 사례에는 물론 신년·성절 賀禮와 같은 정례적 사행도 포함되었으나, 황제 의 政敵 평정 하례나 왕실 간 통혼 성사에 대한 謝禮 등 특별한 사안에 대한 賀禮 혹은 謝禮를 위한 사행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은 종실을 正使로 파견한 것이 몽골과의 관계 초기,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가진 사안과 관련한 사행의 격을 높이기 위한 고려 측 人選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외교를 위한 국가 간 사행에서 사신, 특히 正使의 격은 곧 사신 파견 주체가 상대국과의 관계에 어느 정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正使의 '格'을 무엇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드러낼 것인지는 사행의 목적 및 파견 주체와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고려 전기, 宋과의 관계에서 파견되었던 고려 측 사신들의 경우를 볼 때, 고려에서는 그의 가문 배경 및 관품, 학식 등을 사신 人選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⁴⁾ 그런 점에서, 종실을 正使로 파견한

4) 박웅운, 1995-1996 「高麗 宋 交聘의 목적과 使節에 대한 考察(上)·(下)」 『한국학보』 21-22.

것은 고려의 입장에서 가문 배경이나 官品 등을 기준으로 한 正使의 격을 최대한으로 높임으로써 몽골과의 관계에 최대한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종실이 正使로 파견된 사례가 몽골과의 관계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이러한 양상이 관계의 대상이었던 몽골로부터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 구체적 일면은 고려 宗室의 사행이 시작된 초기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에서 종실이 사신으로 파견된 최초의 사례는 1339 년(고종 26) 新安公 王侏의 사행이다. 이 사행을 비롯해 고종대에는 총 4 차례 종실 사신 파견 사례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행들은 그 사행의 목적이 명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당시 전쟁 과정에서 전쟁 종식의 전제조건으로 몽골 측이 요구했던 국왕 親朝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몽골은 2 차 침입 이후부터 강화를 위한 조건으로 국왕의 친조를 요구했다. 이후 1235 년(고종 22)부터 시작된 3 차 침입을 마무리하면서, 몽골에서는 고종 26 년(1239) 4 월과 8 월, 두 차례에 걸쳐 사신을 파견하여 국왕이 몽골에 친조할 것을 다시 요구했고, 12 월, 고려에서는 新安公 王侏와 少卿 宋彥琦를 몽골에 보냈다.⁵⁾ 이후 고종의 둘째 아들이자 원종의 동생인 安慶公 王淐 역시 1253 년(고종 40)과 1257 년, 두 차례에 걸쳐 몽골에 파견되었는데, 이 역시 당시 새롭게 황제위에 오른 憲宗 몽케가 군사적 침입과 함께 국왕 혹은 왕자(태자인 것으로 생각됨)의 親朝를 요구한 데에 따른 것이었다.⁶⁾ 이를 통해 볼 때, 종실의 사행은 몽골과의 전쟁 과정에서 몽골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국왕 친조를 피하면서 몽골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고려 측 임기응변책의 한 가지로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고종은 몽골의 사신들이 왕이 江外까지 나와 영접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나가지 않고 新安公 王侏를 보내어 사신들을 맞이하게 했으며,⁷⁾ 몽골 군대가 침입해 와서 국왕과 태자가 직접 항복할 것을 요구했을 때에도 永安公 王儁를 대신 보냈다.⁸⁾

이러한 종실의 사행이 고려 측에서 기대한 바와 같이 몽골 측에 대해 국왕이나 태자의 親朝 혹은 직접 항복을 온전히 대신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239 년(고종 26) 몽골에 갔던 新安公 王侏은 이듬해 9 월에 돌아와서 황제가 국왕의 親朝를 요구했음을 다시 전했고, 安慶公 王淐은 '王子'였지만, 1257 년(고종 44) '王子 入朝' 요구에 따른 그의 入朝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몽골에서는 다시 太子의 親朝를 요구해 왔다. 그리고 太子 王儆(위의 元宗)의 親朝를 통해서야 양국 간 講和가 성립될 수 있었다. 즉, 당시 몽골 측에서는 국왕·태자와의 직접적 관계를 요구했을 뿐 宗室을 사신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前者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고려 측은⁹⁾ 그러한 몽골 측 요구의 맥락을 '고려의 입장'에서 조율하여 宗室을 사신으로 파견했고, 이러한 양상은 강화 이후에도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몽골에 入朝하여 강화를 성사시킨 후 즉위한 元宗은 世祖 쿠빌라이의 즉위를 賀禮하기 위해 그가 몽골에 보낸 즉위 후 첫 사행단을 종실 永安公 王儁 인솔 하에 파견했으며, 얼마 후 쿠빌라이가 즉위 과정에서 경쟁했던 아릭부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賀禮하기 위한 사행단은 아들이자 태자였던 王諱을 正使로 삼아 보냈다. 그리고 위 표에 보이듯이 이러한 사행은 이후에 도 몇 차례 이어졌다. 스스로 親朝를 하는 것에

5) 『高麗史』 권 23, 고종 26 년 4 월, 8 월, 12 월.

6) 『高麗史』 권 24, 고종 40 년 8 월 己未, 庚午, 10 월 辛未, 12 월 壬申 ; 44 년 7 월 壬申, 12 월.

7) 『高麗史』 권 23, 고종 37 년 6 월 庚子.

8) 『高麗史』 권 24, 고종 45 년 6 월 丙申.

9) 강화 이후에도 고려 측에서는 국왕의 친조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원종 5 년 몽골 측 친조 요구에 대한 고려 측 반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高麗史節要』 권 18, 원종 5 년 5 월)

대한 거부감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아직 통혼과 같은 몽골적 관계 요소가 개입되지 않은 고려-몽골 관계에서, 원종은 전통적으로 국가 간 관계를 매개하는 주요 수단이었던 사행의 격을 높이는 것을 통해 몽골과의 講和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행의 격을 높이는 것은 이전 시기 使臣 人選 기준에 비추어 사행단을 이끄는 正使의 격을 최대한 높이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당시 '고려에서 인식한' 몽골적 맥락에서 종실을 사신으로 보내는 것이 결합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종실의 正使 파견은 스스로 태자로서 入朝한 경험도 있고, 자신의 입조가 이루어지기까지의 논의 과정을 알고 있었던 원종이 자신의 입장 에서, 고려가 경험해 왔던 중국왕조와의 관계 및 사행 양상에 몽골의 관계 형성 방식에 보이는 특징적 면모를 일정부분 수용하고 절충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몽골적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고려와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었던 몽골과 다분히 동아시아적 관계의 맥락에서 이 관계를 바라보고 있던 고려 사이에 아직까지 온전히 동의, 정착되지 않은 고려-몽골 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그러한 관계를 바라보는 원종과 고려 측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원종대 고려-몽골 관계에서, 首長 개인·首長 가문 간의 직접적 관계 형성과 유지라는 몽골적 관계 요소는 그 자체로 기능하기보다는 정례적·의례적 사행이라는 국가 간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이러한 양상은 충렬왕대 이후 왕실 간 통혼이나 국왕 친조와 같은 직접적 관계들이 고려-몽골 관계에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활용되는 과정에서 점차 줄어들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표에서 보다시피, 종실을 正使로 파견하는 사례는 元宗代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忠烈王代 이후, 특히 1298 년 忠烈王과 忠宣王 간에 발생했던 重祚사건 이후로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우선 忠烈王代 이후로는 국왕 스스로가 몽골황실과 통혼을 하기도 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親朝에 임하게 되는 등, 개인 간·가문 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 몽골적 관계 요소들이 전면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굳이 宗室의 正使 파견이라는 절충안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달리 말하면 고려와 몽골의 관계에서 정례적·의례적인 사행이 갖는 비중과 의미가 축소되어가는 양상과도 관련된다. 이러한 점은 사행 자체에서 실무적 사행의 비중과 의미가 증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양국 간 관계를 안정시키고, 안정된 관계를 주기적으로 상호간에 환기·유지하는 주요한 수단이 사행, 특히 정례적·의례적 사행 밖에 없었던 시기의 국가 간 관계에서와 달리, 고려-몽골 관계에서는 고려 국왕이 몽골 황제·황실과 직접 형성한 관계 등 고려와 몽골의 관계를 매개하는 다른 수단들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갖고 등장하게 되면서, 사신의 격을 통해 사행의 격을 높이고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갖는 비중이 이전에 비해 축소된 상황과 관련된다.

한편, 忠烈王代 이후 宗室 正使 파견 사례가 확연히 줄어들게 된 데에는 고려-몽골 관계에서 宗室이 갖는 의미 및 비중 문제도 관련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이 시기 고려-몽골 관계의 성격과 그에 기반한 고려의 권력구조 문제, 국왕 위상의 변화와 관련된다. 고려-몽골 관계 는 冊封과 朝貢이라는 형식을 통해 형성되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가 간 관계 요소와 통혼 등을 통해 형성되는 몽골적(유목사회에서의) 개인 간·가문 간 관계 요소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관계였다. 이러한 관계에 기반해 형성되었던 몽골 복속기 권력구조 아래에서 이루어진 고려 국왕의 위상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고려국왕의 몽골황제의 諸侯로서의 위상이 외교질서 상에서 뿐 아니라 고려 내부적으로도 실질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점, 몽골황제권이 실질적 최고권으로 존재하고 그와의 관계[개인 간·가문 간 관계 포함]를 통해 권력이 부여되는 구조 아래에서 고려국왕은 몽골황제·황실과 유사한 관계를 형성한 다른 권력주체와 경쟁을 해야 하게

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과정들을 통해 왕조체제 아래에서 고려왕실이 갖고 있던 혈연적 정통성의 권위의 비중이 얼마간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존 책봉-조공 관계에서 형식적으로 기능하던 고려·고려국왕의 제후국·제후 위상이 실질화한 변화에 더하여, '駙馬'의 위상[통혼이라는 관계]을 통해 '매우 특별하지만 변동 가능하며 다원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관계'에 고려국왕권이 상당부분 의존하게 된 점, 그리고 '行省丞相'이라는 위상을 통해 관료로서의 속성이 일정부분 고려국왕 위상에 이입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왕 위상의 변화는 이전 시기 고려라는 정치단위 안에서 자체적인 논리에 기반하여 최고권으로 존재해 왔던 고려국왕권이 몽골 복속기에 들어와 그 상위의, 그리고 경쟁 관계의 다른 권력들과의 관계들 속에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변화라는 점에서 '상대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몽골 관계 및 그에 기반한 권력구조는 1269년 元宗 復位 과정을 통해 성립되었으나, 고려국왕과 신료들이 이러한 몽골과의 관계 및 그에 기반한 권력구조의 실태를 인지하고 활용 하는 과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려국왕과 신료들이 이러한 몽골 복속기 권력구조의 특징을 온전히 인지하게 된 것은 1298년 忠烈王과 忠宣王 간 重祚 과정을 통해서였다. 이를 통해 고려국왕과 신료들은 고려국왕이 황제와 형성한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왕이 폐위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으며, 이후 충숙왕대 발생했던 瀋王 응립운동의 과정은 왕실 직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가 황제·황실과 형성한 관계가 국왕-황제 간 관계보다 더 밀접하고 강고한 경우 그 관계를 기반으로 국왕위에 도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¹⁰⁾ 이러한 상황에서 국왕이 몽골에 파견하는 중요한 사행을 宗室이 인솔하게 하는 것은 다소간 정치적 부담을 안은 행위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충렬왕대 이후 宗室을 正使로 파견하는 사례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데에는 이러한 몽골 복속기 권력구조에 대한 인식 문제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한다.

투르카[秃鲁花, turxay]의 파견과 宗室의 케식 참석

使行을 통한 宗室의 활동은 元宗代 이후, 특히 忠烈王代 重祚 이후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고려 宗室들의 정치적·외교적 활동은 다른 통로를 통해 계속되었다.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이 몽골의 케식[怯薛, kešig] 제도이다.

고종 28년(1441) 4월, 고려에서는 顯宗의 후손인 宗室 永寧公 王俊을 왕의 아들이라 '속이고' 양반 자제 10명과 함께 몽골에 투르카로 보냈다. 이는 몽골 측 요구사항인 '6事' 가운데 한 가지인 '納質' 요구에 응하는 것인 동시에, 전년 몽골 측의 국왕 친조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조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王俊은 그가 왕의 아들이 아니라는 점이 '발각'되었으나 그의 몽골 조정에 서의 활동이 인정되어 계속 몽골에 체재하면서 遼瀋지역 총관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고려 측의 최초 투르카 파견은 위와 같이 다소 '애매하게' 이루어졌으나, 이후 몽골 측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투르카가 파견되었고, 이렇게 투르카로 파견된 고려의 종실들은 케식에 참여했다. 케식은 宿衛의 몽골식 표현으로, 칭기스칸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신임을 받았던 대표적 누케르(nöker) 가문들을 비롯해 새롭게 복속한 정치단위 수장의 자제나 친족들을 포함한 몽골 황실의 친위대이다. 이는 몽골제국의 핵심 지배층을 구성하는 집단이었다. 케식에 다른 정치단위 수장의 자제들을 소환하여 참여하게 한 것은 몽골의 입장에서 다른 정치단위의 복속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측면도 갖지만, 이들을 몽골 지배층으로 훈육하기 위한

10) 이상 몽골 복속기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이명미, 2016,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정동행성 승상 부마 고려국왕, 그 복합적 위상에 대한 탐구』, 혜안 참조.

수단이기도 했다.¹¹⁾ 또한 대상자들의 입장에서는 케식에 참여하는 동안 몽골 정치세력들과의 교유를 통해 그 정치적 기반을 확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고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忠穆王과 忠定王을 제외한 고려국왕들은 모두 즉위 전 몽골에 가서 케식생활을 했다. 忠烈王은 元宗 12년(1271, 世祖 至元 8)부터 왕위를 계승한 元宗 15년(1274, 至元 11)까지, 重祚를 거쳤던 忠宣王은 忠烈王 16년(1290)~24년(1298, 成宗 大德 2) 정월, 그리고 같은 해 8월 폐위된 이후 1308년에 복위하기까지(武宗 至大 1), 이후 같은 해 11월에 몽골로 간 이후 티벳으로 유배가게 되는 충숙왕 7년(1320, 英宗 즉위)까지 케식생활을 했다. 忠肅王은 忠宣王이 복위하면서 케식으로 소환되어 왕위를 계승하는 忠宣王 5년(1313, 仁宗 皇慶 2)까지 케식생활을 했고, 忠惠王은 忠肅王 15년(1328, 天順帝 致和 1·明宗 天曆 1)부터 17년(1330, 文宗至順 1)까지 케식생활을 하다가 왕위를 계승했으나, 忠肅王이 복위하게 되면서 다시 케식에 소환되었다가 불성실한 생활을 이유로 충숙왕 후 5년(1336, 順帝 至元 2)에 고려로 귀국 조치되었다. 恭愍王 역시 忠惠王 복위 후 케식으로 소환되어 1351년 왕위를 계승하기까지 케식생활을 했다.¹²⁾

몽골 케식에 참여했던 고려종실은 世子에 한정되지 않았다. 몽골과의 관계 초반에는 왕실 직계가 아닌 인물들이 투르각으로 파견되기도 했고,¹³⁾ 위 고려국왕들의 사례 가운데에도, 忠肅王과 恭愍王의 경우처럼 '世子'가 아닌 상태에서 케식에 소환되었던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忠宣王의 둘째 아들이었던 忠肅王은 忠宣王이 복위한 후, 그 형인 세자 王鑑과 함께 몽골에 숙위로 소환되었다. 몽골 측에서 두 왕자를 함께 보내도록 한 데 따른 것이었다.¹⁴⁾ 恭愍王 역시, 그의 형인 忠惠王이 복위한 후 숙위로 소환되었으니,世子로서 케식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공민왕 즉위 후 충혜왕의 서자였던 釋器를 소환한 것 역시 그를 케식에 들이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몽골에서 '世子'가 아닌 고려 종실들을 숙위로 불러들인 것이 그를 차기 국왕위 계승권자로 뒀으로써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려 했던 것인지의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고려의 신료들은 이렇게 몽골에 케식으로 가게 된 종실을 사실상 차기 왕위 계승권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려 신료들이 王祺(뒤의 恭愍王)가 케식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를 '大元子'라 칭했던 것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¹⁵⁾ '元子'란 원래 왕의 맏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원자가 곧 세자, 왕위 계승권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때 고려의 신료들이 충혜왕의 동생인 王祺를 굳이 '대원자'라 칭했던 것은 그가 '세자'에 책봉된 것은 아니지만 몽골에서 숙위생활을 하게 되면서 차기 계승권자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고 고려신료들이 인식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몽골의 케식제도가 고려 왕위계승 후보자격을 제공하고 그 정치적 환경을 조성 하는 제도로써 일정부분 인식되고 기능하게 된 가운데, 기존에 이러한 역할을 했던 고려의 太子制度는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11) 森平雅彦, 2001, 「元朝ケシク制度と高麗王家-高麗·元 關係における禿魯花の意義について」, 『史學雜誌』 第110編 第2號.

12) 케식 참여기간은 대체적인 것으로 연도 단위를 중심으로 표시했고 일시적으로 귀국한 것은 표시하지 않았다. 고려국왕의 즉위 전 케식 참여 상황 및 고려 종실들의 케식 참여 상황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森平雅彦, 위 논문, 2001 참조.

13) 몽골과의 강화가 이루어지기 전인, 고종 28년(1241) 몽골에 투르각으로 갔던 永寧公 王鐔, 충렬왕대 帶方公 王澈 및 그의 아들 中原公 王鼎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외에 忠宣王으로부터 瀋王位를 계승했던 王暉 및 그 손자로서 瀋王位를 계승한 王篤朶不花 역시 케식에 참여했다.

14) 『고려사』 권124, 尹碩 傳.

15) 『고려사』 권38, 공민왕 총서 충혜왕 후 2년 5월.

光宗代에 도입된 고려시대 太子制度는 크게 冊封과 東宮官 운영으로 나누어진다. 대개 재위 중인 국왕[現王]의 맏아들을 太子로 冊封함으로써 혈연적 정통성을 기반으로 한 권위가 부여된다. 면, 東宮官 임명과 운용은 그가 즉위한 후 국왕으로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미리' 조성해주는 역할을 했다. 태자의 교육과 호위를 담당할 동궁관은 그 자체가 태자의 국왕으로 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이후 국왕으로서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함께 해야 할 관료들과의 관계를 미리 형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이기도 하다. 동궁관에 임명된 인물들은 대개 임명 당시 고위 관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태자가 왕위에 오른 후 고위 관직에 오르고 있었음이 확인된다.¹⁶⁾ 더하여, 태자제도는 후계를 둘러싼 정국 분열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면에서 현 국왕의 정치적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태자 책봉이 국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결정적이겠지만, 동궁관의 구성에서도 확인 되듯이 태자의 정치적 인적 기반은 사실상 현 국왕의 그것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고려의 태자제도는 몽골과의 관계에서 다소간 변화를 보인다. 우선 격식 면에서 고려의 왕위계승권자인 태자가 제후국의 위상을 반영한 '世子'로 격하되었다. 한편, 고려전기의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태자의 책봉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대개 現王의 맏아들을 태자로 삼고[立太子, 爲太子] 동궁관을 임명하여 太子府를 구성하여 교육을 시킨 후, 적절한 시기에 그를 태자로 책봉 했다[冊太子]. 태자를 세운[立太子] 이후 태자를 책봉[冊太子]하기까지의 시차는 다양하다. 원종 대에서 충렬王代까지의 世子制度 운용은 고려전기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世子 制度'는 충宣王代에 들어오면서 크게 변화하여, 왕권과 왕위계승 과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기능을 거의 상실한 채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충선왕의 장자 王鑑과 次子 王燾(뒤의 충숙왕)는 각기 1310 년(충선왕 후 2) 정월과 1313(충선왕 후 5) 3 월에 '世子'로서 왕위를 물려받았다는 기록을 통해 모두 세자였음이 확인된다. 이들이 세자가 된 시기는 王鑑은 충선왕이 복위한 1308 년 8 월 이후 1310 년 정월 이전, 그의 동생인 王燾는 王鑑이 사망한 1310 년 5 월 이후, '세자로서 왕위를 이어받은' 1313 년 3 월 이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충宣王의 두 왕자에 대해서, 특히 왕위를 계승한 忠肅王에 대해서는 그 책봉과 관련한 기록 뿐 아니라 그 世子府 구성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이 유의된다. 이러한 점은 이후의 세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충숙왕의 장자이자 세자인 王禎(뒤의 忠惠王)에 대해서는 그가 1328 년(충숙왕 15)에 '세자로 서' 몽골에 숙위로 갔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시 세자 책봉이나 세자부 구성과 같은 관련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忠肅王이 瀋王과의 분쟁으로 몽골에 소환되어 머물다가 고려로 귀국 한 것이 1325 년에 이르러서였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1328 년 王禎이 세자로서 숙위를 위해 몽골로 가기까지 3 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고, 瀋王과의 왕위계승 분쟁 이후 정국 안정을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서 세자 책봉과 세자부 설치 등이 필요했을 수 있을 것 같음에도 관련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선행하는 元宗代나 忠烈王代의 세자 책봉 및 관련 제도 운영 양상에 비교되는 지점이다.

충혜왕의 장자로 왕위를 이었던 忠穆王에 대해서는 '世子'라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충목왕이 즉위 당시 8 살이었음을 고려할 때, 어린 나이로 인해 忠惠王 재위시 '아직' 세자로 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더하여, 忠宣王이 복위한 후 맏아들을 세자로 세우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정치기반 확보를 위해 그에 수반되었던 세자부 설치나 세자의 지위를 확정하는 세자 책봉 등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6) 김창겸, 2008, 「고려 현종대 동궁관 설치」 『한국사학보』 33.

물론, 이러한 양상은 기록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국왕의 공식적 왕위계승자로서의 태자-세자가 갖는 위상을 고려할 때, 그를 책봉하는 의례는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태자 책봉례 이후 관련한 사면령을 내리거나 태자의 생일을 절일로 삼아 기념하기도 했던 고려전기의 전례를 고려한다면, 실제 책봉이 이루어지고도 그 기록이 남지 않았던 당시 상황은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 한편, 忠定王과 恭愍王은 모두 '선대 왕[前王]'의 아들이 아니기도 하여, '世子'가 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특히 忠宣王代 이후 태자/세자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게 된 것은 이 제도의 기저에 있는 왕위계승과 관련한 고려 전래의 관념이 가졌던 권위와 규정력이 몽골과의 관계에서 상당부분 약화되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변화는 당연하게도 고려 왕권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시대 왕조체제에서 태자가 국왕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면서도 왕권에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권력이 국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었으며, 그의 정치적 기반이 국왕의 그것에 직결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차기 왕위계승권자가 고려 내에 있지 않고 몽골 조정에서 케식에 참여하게 된 가운데, 국왕은 자신의 후계가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태자제도를 통해 구성되었던 태자의 정치적 인적 기반이 국왕의 그것에 포함되어 있었음에 비해, 케식제도를 통해 구성되는 세자 혹은 왕위계승 후보자의 세력기반은 국왕의 그것과 교집합을 갖는 동시에 차집합을 갖게 되었고, 이 차집합은 숙위기간 및 해당 종실의 역량에 따라 확장 가능했다.

또한 고려국왕들은 이 시기 거듭되었던 계승 분쟁 과정에서 폐위된 국왕들의 신병도 장악하지 못했다. 각기 1298 년과 1332 년에 몽골에 의해 폐위되었던 충선왕과 충혜왕은 모두 몽골로 소환되어 숙위기간을 다시 거친 뒤 각기 父王이 사망한 후 복위했다. 1332 년 폐위 후 다시 케식에 들어갔던 충혜왕이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귀환 조치되었던 것을 보면, 이들을 몽골로 소환, 케식에 참가하게 한 것은 '재교육'의 의미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몽골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 간에, 폐위된 국왕에 대한 위와 같은 조치들은 '이전 왕[前王]'의 신병을 '현재 왕[現王]'이 장악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으로 '전왕'의 복위 가능성을 남겨 둠으로써 고려의 권력중심을 이원화시키고 국왕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른바 '反元改革'을 단행했던 공민왕이 몽골이 소환한 충혜왕의 庶子 釋器에게 반역죄를 씌워 주살하고자 한 것이나, 이후 당시 몽골에 있던 충선왕의 孽子 德興君 타스테무르의 송환을 요구했던 것은 모두 이러한 몽골 복속기 권력구조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었다.

한편, 케식제도는 국왕을 둘러싼 정치적 인간관계망, 즉 신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세자 혹은 왕위계승 가능성을 가진 종실이 몽골에 숙위하는 과정에 고려신료들이 수행하게 되면서, 이들은 이전 태자부의 동궁관들과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왕위 후계자가 고려 내에서 현 정권과 밀착된 고려신료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닦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떨어진 몽골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10 년에도 이르는 장기간 동안 그를 수행한 신료들과의 관계 및 몽골 내 세력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수종신료들이 그들이 수종했던 인물이 왕으로 즉위한 후 이른바 '측근세력'으로서 그 주요한 정치적 기반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¹⁷⁾

이러한 수종신료들 가운데 일부는 그들 스스로가 케식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케식 참여는 해당 신료 당대에 끝나지 않고 그 자제를 통해 대를 이어 계승되었다. 즉, 몽골과의 관계 속에서 고려국왕이 자신의 핵심적 정치적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17) 몽골 복속기의 측근세력에 대해서는 김광철, 1991, 『高麗後期 世族層 研究』, 동아대학교출판부; 이 익주, 1996, 「高麗·元 관계의 構造와 고려후기高麗後期 政治體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참조.

통로의 하나였던 케식제도가 한편으로는 고려의 신료들이 국왕의 통제에서 벗어나 황제권과 직접 연결되는 것을 항상적,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존, 국왕을 정점으로 형성되었던 고려의 정치적 인간관계 망이 황제를 중심으로 재편된 것이다.

맺음

몽골은 고려와의 관계에 기존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국가들 간 관계를 상당부분 규정하였던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른바 '책봉-조공'이라는 의례적 형식 이외에 유목집단들 간의 관계 형성과 유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首長 및 首長 가문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몇 가지 방식들을 적용시키고자 했다. 30 년에 이르는 전쟁 과정에서 講和의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국왕 親 朝와 質子_투르카 파견 요구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 고려는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으나 자신들이 익숙했던 국가 간 관계에 비추어 나름의 해석을 가하며 대응했다. 이러한 가운데, 몽골과의 관계 이전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고려 宗室 및 太子의 정치적·외교적 활동이 두드러지게 되는 변화가 발생했다.

고려-몽골 관계 초기 이러한 宗室 혹은 太子/世子の 정치적·외교적 활동은 주로 고려 對 몽골이라는 관계의 구도 속에서 고려 측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이루어졌다. 전쟁 당시 講和 교섭의 주체로 내세워지거나 관계 초반 正使로서 사행단을 이끌었던 宗室들의 활동이 그러한데, 초기 투르카로 파견되었던 방계 宗室이나 太子/世子の 활동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 관계의 전개와 함께 몽골황제권을 실질적 최고권으로 한 권력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이러한 양상은 변화를 보이게 된다.

즉, 실질적 최고권인 황제권과의 관계에 따라 권력이 부여됨에 따라 - 이러한 '관계'에는 1:1 로 맺어지는 군주 대 군주의 관계 뿐 아니라 1:多로 형성될 수 있는 개인 간·가문 간 관계도 포함되었다 - 고려국왕들은 국왕위에 올라 이를 유지하고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몽골 황제·황실과의 관계에 의존해야 했을 뿐 아니라 유사한 관계를 형성한 다른 권력주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世子가 몽골 조정에서 케식생활을 하게 되면서 世子の 신병 및 그 정치적 인간관계는 고려국왕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게 되었고, 重祚가 빈발하는 가운데 폐위된 국왕 역시 우선은 몽골로 소환되어 케식에 들어가게 되면서 現 국왕은 폐위된 前 국왕에 대한 신병을 스스로 장악하지 못하게 되었다. 즉, 몽골과의 관계 및 그에 기반한 권력구조 아래에서 고려 宗室 혹은 世子는 반드시 고려국왕과 정치적 입장을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宗室 正使 파견과 같이 고려 측에서 몽골 측 요구에 나름의 해석을 가해 진행했던 부분은 확연히 줄어드는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몽골이 다른 정치단위와의 관계에서 보편적으로 운용했고 제국 운영의 근간이 되었던 케식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宗室/世子の 정치적 활동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즉, 首長 개인 간 혹은 지배가문 간의 직접적 관계를 통해 정치단위 간 관계가 형성·유지되었던 몽골의 관계형성방식은 고려에도 상당부분 적용되었고, 이는 고려왕권을 둘러싼 환경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러한 변화는 고려-몽골 관계 속에서 발생한 여러 정치적 사건들을 발생시킨 구조적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몽골 복속기 고려국왕위 계승도

